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영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523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9.

발 의 자:신영대·김윤덕·김수흥

한병도 • 김승원 • 민형배

정필모 • 이장섭 • 이병훈

김정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 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물론 여타 기업들과 연구기관들까지도 국공 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·수익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도록 시행하고 있음.

한편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해상풍력발전, 태양발전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되어 있음.

이에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이에 따른 연관 공공기관의 유치를 촉진하여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46조 및 제58조).

법률 제 호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.

제46조제1항 전단 중 "기업과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"을 "기업과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"으로 한다.

제58조제4항 중 "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(이하 "기업등 "이라 한다)"을 "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(이하 "기업등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6조(토지·건물 등의 사용허	제46조(토지・건물 등의 사용허
가등의 특례) ① 국가 및 지방	가등의 특례) ①
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	
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, 협력	
기업, 외국교육기관, 외국의료	
기관 및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	
역에 입주하는 <u>기업과 연구기</u>	<u>기업과 연구기관</u>
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및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
<u>기업과 연구기관</u> 에 대하여 대	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 및
통령령으로 정하는 새만금사업	공공기관
지역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	
등을 「국유재산법」 제35조・	
제46조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	
관리법」 제21조・제31조에도	
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사	
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. 이 경	
우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50년	
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58조(세제 및 자금지원 등) ①	제58조(세제 및 자금지원 등) ①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새	4
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<u>기업</u>	<u>기업</u>

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기관(이하 "기업등"이라 한다) 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을 임대 하는 경우 해당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「국유 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 다.

과 대통령	<u> 경령으로</u>	정하는	연구
<u>기관 및</u>	공공기된	관(이하	"기업
등"이라	한다)		